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4. 23.(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4월 12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3. 제안 이유

-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긴급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안 제3조)
- 교육(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5. 검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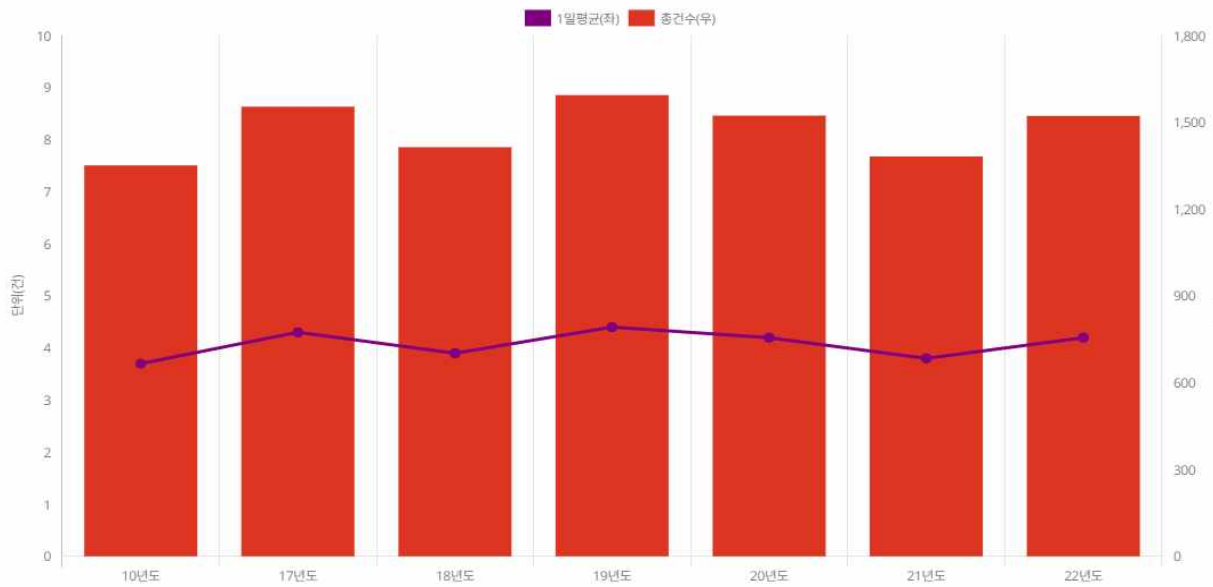
가. 조례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 긴급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서는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교육)에서는 방연물품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 기준, 2022년 충청북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발생 건수는 1,522건, 하루평균 발생 건수는 4.2건임.

화재발생



*자료출처 : 충청북도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

(단위: 건)

구분	화재발생				1일 평균
	총건수	방화	실화	기타	
'10	1,351	79	1,168	104	3.7
'17	1,554	34	1,340	180	4.3
'18	1,414	32	1,194	188	3.9
'19	1,594	32	1,317	242	4.4
'20	1,523	25	1,351	147	4.2
'21	1,382	17	1,209	156	3.8
'22	1,522	15	1,300	207	4.2
전국('22)	40,113	746	35,176	4,191	1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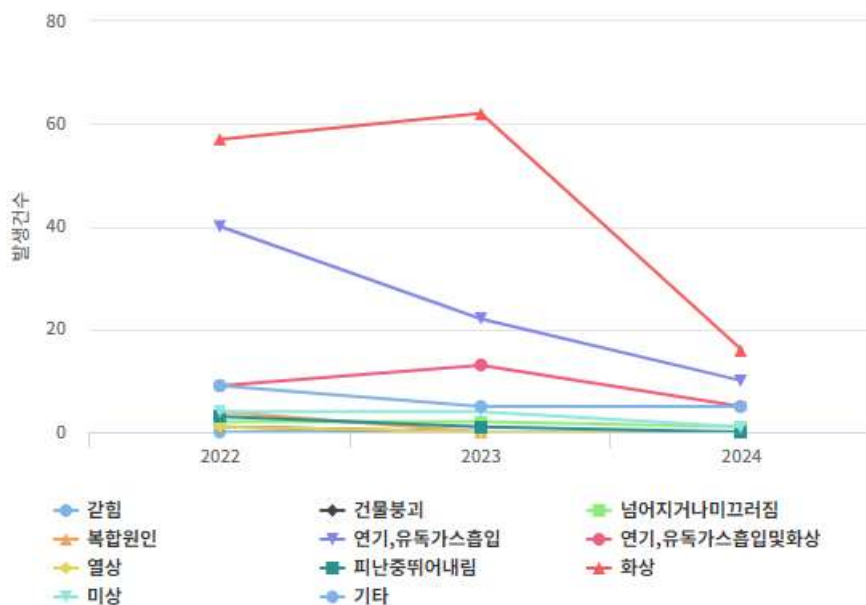
*자료출처 : 충청북도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

- 2022년부터 2024년 4월 기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근거하여 화재 유형별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축, 구조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음.



*자료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2년부터 2024년 4월 기준, 충청북도의 화재 원인 중 건축, 구조물로 인한 사상의 원인 중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사상자가 전체 사상자 대비 약 26%로 화상으로 인한 원인 다음으로 많음.



*자료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사상원인] 충청북도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130	109	38
간힘	0	0	0
건물 붕괴	1	0	0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2	2	1
복합원인	4	0	0
연기 유독가스 흡입	40	22	10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9	13	5
열상	1	0	0
피난 중 뛰어내림	3	1	0
화상	57	62	16
미상	4	4	1
기타	9	5	5

*자료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재난대비용 긴급대피용 화재대비용 방연물품, 방연마스크 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도는 아래 표와 같이 8곳임.

	조례명	제개정일
1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0. 제정
2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	2023. 10. 6. 제정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3. 8. 11. 제정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9. 제정
5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25. 제정
6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9. 제정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4. 제정
8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4. 제정

-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신규 사업으로 각급학교에 방연마스크를 구입·비치하도록 예산 반영을 권장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건축, 구조물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사상자가 전체 사상자 대비 약 26%에 달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화재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특히 화재에 의해 발생한 연기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대피 능력을 저하해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화재사망자의 60% 이상이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따라서 화재 대피에 취약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현장 및 체험 교육 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그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 이후, 화재 등 재난 예방 교육 시 마스크 비치 위치, 사용법 등에 대한 숙지와 메뉴얼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하여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